##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76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김태선・이기헌・권칠승

정준호 · 김영배 · 장철민

김태년 · 오세희 · 한민수

김준형 · 김성회 · 박 정

이용우 • 최기상 • 맹성규

이훈기 • 박균택 의원

(179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,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 현행법 시행규칙 [별표8]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,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, 공휴일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(A)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·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,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(안 제2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소음 ·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음 • 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토요일·일요일과 공휴일(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)	제21조(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・진	②
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	
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 <u>수단</u>	<u>이 경우</u>
<u>신설&gt;</u>	토요일·일요일과 공휴일(「 <u>공</u>
	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
	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
	를 포함한다)에 적용되는 규제
	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날에 적
	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
	<u>두어야 한다.</u>